

심의회가 운영상 실익이 없어 폐지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위원의 정수를 6인 및 9인 이내로 규정한 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바, 위원 정수가 1명 초과되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 5. 토론요지: 수정(안)가결할 것을 동의
-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97.2.22. 김세창의원의 1인

나. 수정이유: 위원회의 위원 구성 내용중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골자: 안 제2조제3항제1호중 "6인"을 "5인"수정

7. 심사결과: 수정(안)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63
----------	-----

제안년월일: '97. 2. 22.

제안자: 총무재무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수정골자

○안 제2조제3항제1호중 "6인이내"를 "5인이내"로 수정함.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항제1호중 "6인이내"를 "5인이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10인 이상 15인이내	제2조(구성) ① ~ ②(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부구청장.....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③
1. 관계공무원중 9인이내	1.6인...	1.5인...
2. 제3조에서 정한 자중 10인 이내	2. 9인.....	2.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
----------	-----

제안년월일: 1997. 2.

제안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음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연가1일 가산(안 제18조제3항)

나. 오전, 오후 반일단위 연가 허가(안 제20조제3항)

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안 제22조제3항)

3.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15조

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244호)

4. 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 필요

첨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연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중 “제3항 내지 제4항”을 “제4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4조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각각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5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영리업무의 금지”를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② (생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① 주민 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8조(연가일수) ①재직기간
.....

재직기간
.....
.....
.....
.....
.....
.....
.....
.....
.....

②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급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현행	개정안
<p>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 (생략) (신설)</p> <p>③~④ (생략)</p> <p>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3회는 <u>결근 1일로 계산한다.</u></p> <p>(신설)</p>	<p>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p> <p>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내지 제4항과 같음)</p> <p>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제22조(병가) ①~② (생략) 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p>	<p>제22조(병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7.(생략) 신설</p>	<p>제23조(공가) 1.~7.(현행과 같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p>
<p>제24조(특별휴가) ①~⑤ (생략) ⑥ 소속기간의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생략) 신설</p>	<p>제24조(특별휴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재직.....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⑦ (현행과 같음)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30일.....
제4장 영리업무의 금지	제4장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안)심사보고서

1997. 2. 2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2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2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4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 ('97.2.22)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홍기

가. 개정이유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음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연가 1일에 가산(안 제18조제3항)

○ 오전, 오후 반일 단위 허가(안 제20조제3항)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안 제22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동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 안 제13조제1항 및 안 제14조의2 규정은 토요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동 조례에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와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토요일 종무시간을 규정함.

○ 안 제18조의 개정내용은 현행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규정함.

○ 안 제20조제3항을 신설하여 연가를 오전, 오후의 반일단위로 실시하도록 하여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함.

○ 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2조제3항의 내용은 지참, 조퇴 및 외출시간의 누계가 8시간은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복무자세를 유도하고자 동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병가·조퇴·외출 등 직원의 복무상황을 일일이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는 데, 실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 답변요지(홍기 총무과장) :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효율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6
----------	-----

제안년월일 : 1997. 2.

제안자 : 마포구청장

1. 提案理由